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2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22년) 평가결과 공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22년도에 운영된 14개 지구)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목적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자율주행 실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함
- 평가대상은 '22년도 상반기 이전에 지정되어 운영중인 14개 지구로 아래와 같음

서울특별시 상암·청계천·강남, 경기도 판교·시흥, 충북·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군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원주, 전라남도 순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 평가결과

- 붙임 자료에 따름

□ **평가 개요**

- (추진배경) 자율자동차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관할 지자체의 시범 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온라인 상 게재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과평가 위탁수행(국토부 고시)
- (평가대상) 평가 개시 시점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운영된 시범 운행지구를 평가하며, '23년 평가대상은 서울 상암 등 14개 지구*
 - * (서울) 상암, 청계천, 강남, (경기) 판교, 시흥, (충청) 충북·세종, 세종, (전북) 군산, (강원) 강릉, 원주, (전남) 순천, (광주) 광주, (대구) 대구, (제주) 제주
- (평가기준) 지자체별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지구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
 - * 평가항목 방법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를 따름

□ **시범운행지구별 평가결과 : 총 14개 지구**

- A등급은 서울(상암) 1곳,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

《14개 시범운행지구별 평가결과》

연번	지구명	평가등급	연번	지구명	평가등급
1	서울(상암)	A	8	강원(강릉)	D
2	광주	B	9	서울(강남)	E
3	서울(청계천)	B	10	세종	E
4	제주	B	11	전북(군산)	E
5	경기(판교)	B	12	경기(시흥)	E
6	충북·세종	C	13	전남(순천)	E
7	대구	C	14	강원(원주)	E

* 평가 결과 “A”인 지구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고, 3년 연속 “E”인 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가능

□ 지구별 평가결과(상세)

○ 14개 시범운영지구 평가결과, 'A' 1개, 'B' 4개, 'C' 2개, 'D' 1개, 'E' 6개

연번	지구명	평가등급	평가자 주요의견
1	서울 상암	A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당해 운영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운영계획에 적합한 유상운송 서비스가 제공됨. 단, 미운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요 ○ (시설) 기반시설 및 시스템이 잘 구축됨 ○ (제도) 조례 제정 및 면허 발급체계가 잘 마련됨 ○ (기타) 효과분석에 필요한 운영데이터 구득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시스템 개선 노력이 인정됨
2	광주 광역시	B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라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차별성 돋보이나, 일부 서비스는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음 ○ (시설) 기반 시설이 잘 구축됨 ○ (제도) 무인자율차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인정됨 ○ (기타) 운영 실증데이터 적극적 수집 및 제출
3	서울 청계천	B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당해 운영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운영되었으나, 지구 운영 계획에 맞춰 유상운송서비스로의 전환 필요 ○ (시설) 인근의 기 구축 자율주행 인프라를 잘 활용·운영 ○ (제도) 조례 제정 및 면허 발급체계가 잘 마련됨 ○ (기타) 기 계획된 단계별 서비스 확대 계획에 맞추어 차년도 운영 계획 목표 상향 설정됨
4	제주	B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당해 운영계획에 따라 유상운송서비스가 적정하게 운영 되었으며, 시범운영지구 중 최장거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 단, 유상운송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성/자율주행 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분석 필요 ○ (제도) 시범운영지구, 자율차 운송사업 지원 관련 조례 필요 ○ (안전) 안전취약구간에 대한 돌발 발생원인과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사고 방지를 위한 꾸준한 안전관리 필요 ○ (기타) 운송사업자와의 운행데이터 공유체계가 잘 갖춰짐
5	경기 판교	B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당해 운영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유상운송서비스로 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시설) 기반시설 및 시스템은 잘 구축되었으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기타) 운행데이터 구득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 마련 필요
6	충청권 (세종·충북)	C (다소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타 시범운영지구와 차별화된 광역형 BRT서비스가 당해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됨 ○ (안전) 시범운영지구 내 사고 위험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필요 ○ (기타) 운행데이터는 잘 확보하였으나, 구득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미있는 결과 도출 권장

연번	지구명	평가등급	평가자 주요의견
7	대구	C (다소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운영계획에 적합한 유상운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당해 계획된 일부 서비스 중 일부가 운영되지 않음. 또한 유상운송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성/자율주행 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분석 필요 ○ (시설) 다수의 관제센터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필요 ○ (제도) 시범운영지구 운영에 필요한 법·제도체계가 잘 갖춰짐 ○ (기타) 신뢰성 있는 운행데이터 구득을 위한 계획 필요
8	강원 강릉	D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역 특성(관광)을 반영한 특색있는 노선을 발굴하고 당해 계획한 모든 서비스를 운영함 ○ (제도) 자율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 필요 ○ (안전) 불법주정차 차량 관리 방안 필요 ○ (기타) 성과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운행데이터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효과분석 수행 필요
9	서울 강남	E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교통환경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도하는 점은 인정되나, 당해 계획된 모든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고, 단 하나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기술실증만 수행됨. 지구운영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현실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 ○ (기타) 운행데이터 구득을 위한 현실적 계획 마련 필요
10	세종	E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당해 계획된 대부분 서비스 정상 운영되지 않음 ○ (시설) 기반시설 구축 실적이 낮음.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조례) 시범운영지구 전담 조례 제정 필요 ○ (기타) 운행데이터 구득을 위한 현실적 계획 마련 필요
11	전북 군산	E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당해 계획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만회대책필요 ○ (제도, 안전, 갈등) 제도 마련, 갈등관리,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
12	경기 시흥	E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당해 계획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만회대책필요 ○ (시설)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잘 구축됨 ○ (제도, 안전) 제도 마련, 갈등관리,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
13	전남 순천	E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당해 계획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만회대책필요 ○ (제도, 갈등, 안전) 제도 마련, 갈등관리,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
14	강원 원주	E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당해 계획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만회대책필요 ○ (제도, 갈등, 안전) 제도 마련, 갈등관리,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요약

① (운영계획 달성도^{배점60}) 14개 평가대상 지구에서 총 60개의 계획 서비스 중 26개*가 실제 운영되어 계획 대비 서비스 비율은 43%

* 유상운송 실증지구: 서울 상암(4개, 7대), 세종(1개, 1대), 충청권(2개, 3대), 대구(4개, 3대), 제주(1개, 1대), 서울 청계천(1개, 2대)에서는 여객유상운송 특례를 받아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실적 양호

일반 실증지구: 광주(4개, 2대), 경기 판교(4개, 7대), 강원 강릉(4개, 4대), 서울 강남(1개, 4대)에서는 실증사업을 추진함

② (규제특례 효과^{배점20})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차는 대부분 교통량이 적은 비첨두시에 소수의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도로소통 및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일반교통량(25km/h)과 자율차교통량(21km/h) 간 평균통행속도 차이는 약 4km/h

- 향후 자율차 기술발전에 따라 첨두시 운영이 가능해지면 지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가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③ (교통물류체계 발전효과^{배점10}) '22년말 기준 14개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 참여기업 41곳에 종사하는 인원은 3,238명

- '21년말 기준 7개 지구 내 자율주행 참여기업(23개) 종사인원이 922명(현대차 제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범운영지구 확대 및 실증 서비스 참여기업의 증가(18개 기업 순증)로 고용규모도 확대 추세

④ (차년도 운영계획^{배점10}) '22년 대비 '23년 월평균 운행거리 목표는 +11%(26.7천km→29.6천km), 재정지원은 +1%(318억원→321억원)로 상향

붙임 2

운영성과 평가부문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배점

평가 부문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지표	배점
I.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 부문	60	I-1.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20	I-1-1. 서비스 운영기간	5
				I-1-2. 월평균 운행거리	6
				I-1-3. 유상운송 대수 상한 대비 허가 대수	4
				I-1-4.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	5
		I-2.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및 관리 실적	10	I-2-1. 기반시설 구축률	4
				I-2-2. 기반시설 관리 노력	6
		I-3. 재정적·제도적 지원 실적	8	I-3-1. 제도적 지원 실적	4
				I-3-2. 재정지원 실적	4
		I-4. 안전관리 실적	15	I-4-1.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예방 및 개선 노력	5
				I-4-2. 안전확보 및 향상 노력	6
I-4-3. 돌발상황 저감노력	4				
I-5. 갈등관리 실적†	7	I-5-1. 갈등 관리 노력	7		
II. 시범운영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부문	20	II-1. 지구 지정 효과	13	II-1-1. 도로 소통상황 변화	7
				II-1-2. 도로안전성 변화	6
II-2. 규제특례 효과‡	7	II-2-1.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	7		
III.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 부문	10	III-1.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 효과	4	III-1-1. 도입확산 정도	4
				III-2-1.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4
		III-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 효과	6	III-2-2. 참여기관의 기업성장도	2
IV.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평가 부문	10	IV-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5	IV-1-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 적정성	5
		IV-2.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	3	IV-2-1.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의 적정성	3
		IV-3. 재정지원계획 목표	2	IV-3-1. 재정지원계획 목표의 적정성	2

* 유상서비스에 대해서만 평가. 이용실적이 없는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만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제외하고, 제4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

‡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공서비스만을 운영하는 시범운영지구의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제외하고, 제4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

주) 평가배점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